

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75
----------	------

2018년 6월 19일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8. 14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. 8. 16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6.1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권기욱 도시계획국장)

가. 제안이유

2003년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」는 2008년부터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되어왔으나, 2011. 3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의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8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·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거나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시가지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9월 제정된 조례임.
- 시가지 광고물 정비는 2011년 3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¹⁾으로 간판개선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, 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 조례 폐지에 대한 시·자치구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) 법률 제10466호, 2011.3.29.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